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8월 11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0929호

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7조의 제목 “(권한의 위임·위탁)”을 “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, 제5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, 제8항,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4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⑥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.

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「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

2.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

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7조제5항”을 “제6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,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설립됨에 따라, 환경부장관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및 정기검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, 품질 및 성능을 제고하려는 것임. <법제처 제공>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통령 문재인 인

2020년 8월 11일

국무총리 정세균

국무위원

조명래

환경부장관

●대통령령 제30930호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